



공고 개정
2010년 3월 2일

Joel I. Klein
Chancellor

교육감 규정서

번호: D-150

범주: 특수교육 위원회

주제: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 및 뉴욕시 제 75 학군 위원회 위원 선출 절차

I. 검토중인 제안 안건의 주제,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설명과 안건에 대한 모든 주요 개정 조항 설명.

교육감 규정서 D-150은 2009년 3월 11일자 교육감 규정 D-150을 갱신 및 대체합니다. 본 규정서는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(CCSE)와 뉴욕시 제 75 학군 위원회 (D75 위원회)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입후보 및 선출 절차를 규정하며 D75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
2009년 12월 11일 D-150 개정안이 발표된 이래 교육청은 특수교육 위원회가 더 이상 제 75 학군 학생들의 학부모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. 이러한 의견에 대응해 교육청은 제안된 규정서 개정안을 수정했습니다. 새로 제안된 규정서는 2개의 특수교육 위원회의 구성을 제공합니다: CCSE 및 D75 위원회

D75 위원회는 11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과 1명의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 투표권을 가진 위원 중 9명은 반드시 모든 75 학군 학교에서 교육감 규정서 A-660에 따른 필수 PA/PTA 임원 3명에 의해 선출된 제 75 학군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합니다. 남은 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공익 옹호실에서 임명합니다. CCSE 위원 선출은 2010년, 2011년 5월 둘째 화요일 실시되며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됩니다. 2010년 7월 1일 신규 CCSE 위원이 임기를 시작하면 CCSE의 현직 위원들은 자동적으로 D75 위원이 될 것입니다. D75 위원회 위원 선출은 2011년 5월 두 번째 화요일 실시될 예정이며 그 후 2년에 한 번씩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. 규정서에 대한 다음의 개정 사항은 D75에 해당합니다:

- 투표권을 가진 위원 중 9명은 반드시 본 규정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제 75 학군에서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며 나머지 2명의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뉴욕시 공익 옹호실에서 임명합니다.
- 원래의 제안된 규정서 개정안에 명시된 CCSE 학부모 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D75 위원회에도 적용됩니다; 그러나 제 75 학군 프로그램에서 뉴욕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만이 D75 위원회에서 활동할 자격을 가지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 위원은 반드시 제 75 학군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어야 합니다.

- D75 위원회 선출 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, 교육청의 가정참여 지원실은 D75 회장위원회와 협력하여 각 보로 별로 후보자 포럼을 개최합니다. 온라인 권고 투표에 모든 제 75 학군 학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 담당 수석 성취 담당관이 D75 위원회에서 활동할 제 75 학군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명을 선발합니다.
- 공석을 총원하는 절차: (1) 공익 옹호실 임명직이 공석인 경우 공익 옹호실에서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위원을 임명합니다; (2) 학생 위원직이 공석인 경우 장애학생 및 영어학습학생을 위한 수석 성취 담당관이 다른 자격을 갖춘 12학년 학생을 임명합니다.
- 개정된 규정서는 D75 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를 명시합니다.

II. 최초 공시 후 접수된 모든 시민 의견에 대한 요약.

시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: (1) 현재 CCSE 위원은 선출된 임기를 수행해야 합니다; (2) 공익 옹호실 임명직 외 기타 공석의 경우 공석을 제 75 학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원하기에 앞서 우선 커뮤니티 학교학군 학교에서 IEP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 총원해야 합니다; (3) 제 75 학군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; (4) CCSE 선출자는 교육감 규정서 D140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선출자이어야 합니다; (5) 각 보로 별로 후보자 포럼을 개최해야 합니다; (6) 각 보로를 대표하는 2명의 학부모를 포함해 11명이 아니라 총 13명의 대표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.

III. 개정 조항 전문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관한 정보.

개정 조항 전문은 아래 PEP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:

<http://schools.nyc.gov/AboutUs/leadership/PEP/default.htm>

IV. 현재 검토 중인 개정 조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검토중인 안건에 관해 문의를 하거나,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구두 또는 문서상으로 의견을 제출할 교육청 담당자 성명, 담당부서, 주소, 이메일 및 전화번호.

성명: Melissa Harris
 소속 부서: 가정 참여 지원실(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)
 주소: 52 Chambers Street, New York, NY 10007
 이메일: CCSEpolicy@schools.nyc.gov
 전화: 212-374-6624

V. 현재 검토 중인 개정조항에 관한 표결이 이뤄질 PEP 회의 날짜, 시간 및 장소.

2010년 3월 23일

6:00pm

Michael J. Petrides School

715 Ocean Terrace, Staten Island